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42
----------	------

2020년 12월 1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0월 16일, 김창원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 다. 상정일자 : 제298회 정례회 제8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창원 의원)

가. 제안이유

- 시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에 민간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20.4.7.)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관리주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추가(안 제2조제6호다목).

(2)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주체를 현행 시장에서 민간을 포함하는 관리주체로 확대하고, 공공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의무를 별도 명시함(안 제18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갖는 관리주체에 민자사업자를 추가하여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p> <p>가.·나.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2조(장어) _____</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_____.</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p>
<p>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u>시장</u> _____</p> <p>_____</p> <p>_____.</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성능개선충당금 적립) ① <u>시장은</u>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성능개선충당금”(이하 “성능개선충당금”이라 한다)</u>을 적립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성능개선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그 밖에 <u>시</u>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p>	<p>제18조(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① <u>관리주체는</u> _____</p> <p>_____</p> <p><u>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 <u>관리주체의</u> _____</p>

- 상위법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은 ‘20.4.7일 일부개정을 통해 민간관리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관리주체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관리

자를 추가하였으며, 본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해당함.

[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사항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 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에 민간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관리감독기관을 지정하며, 기반시설의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대상에 민간관리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제16145호, 2018. 12. 31., 제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제17237호, 2020. 4. 7., 일부개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p> <p>가. ~ 다.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p> <p>마.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관리자(이하 “민간관리자”라 한다)</p>
<p>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체계)</p>	<p><개정사항 생략></p>
<p>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p>	<p><개정사항 생략></p>
<p>제21조(비용의 지원)</p>	<p><개정사항 생략></p>
<p>제23조(성능개선 총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② (생략)</p> <p>③ 성능개선 총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제23조(성능개선 총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이하 “공공관리주체”라 한다)는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성능개선 총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2. 그 밖에 공공기관 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④ (생략) ⑤ 관리주체 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그 밖에 관리주체 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공관리주체 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관리감독)	<이하 개정사항 생략>

- 다만, 본 개정안 제2조제6호에 법 제2조제6호 마목의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관리자” 신설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에는 시 소관 민간관리 기반시설(열수송관, 통신구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서울시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1)에 따른 사업시행자, 즉 민자사업자는 강남순환도로(주), 용마터널(주),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이상 5곳이며([표] 참조),
- 앞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23.12. 개통예정), 제물포터널(‘21.4. 개통예정), 동부간선도로 지하터널(기본설계 추진 중), 이수~과천 복합터널(제3차 공고 예정 중) 등이 추가될 예정임.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9. ~ 17. (생략)

[표] 서울시 민자 기반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관리부서	시설 현황					관리주체 (사업시행자)	비고
			폭	연장 (km)	준공연도	종별	상태등급		
도로	강남 순환도로	도로 계획과	6~8차로	12.4	'16.05.	1종	B등급	강남순환도로(주)	관악터널(4.99km) 봉천터널(3.23km) 서초터널(2.65km)
	용마터널	도로 계획과	4차로	2.56	'14.11.	1종	A등급	용마터널(주)	
	우면산 터널	도로 계획과	4차로	1.97	'03.12.	1종	A등급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철도	우이신설 경전철	도시 철도과	5~20	11.4	'17.07.	1종	A등급	우이신설 경전철운영(주)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서울메트로 9호선	도시 철도과	5~31	27	'09.08.	1종	B등급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정거장 25개소 차량기지 1개소

○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민간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관리운영을 하면서 법과 본 조례 개정에 따라 법적 관리주체가 되어 앞으로 시의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

- 2)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립, 실태조사, 기반시설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협력, 기반시설 유지관리, 성능평가 실시 등에 대한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18조 역시 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리주체로 하여금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단서조항을 통해 현행 조례 제2조제6호 가목(시장 및 자치구청장) 및 나목(시 산하 공기업의 장)의 공공관리주체에게는 성능개선 적립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성능개선 총당금 적립에 대한 재량 대상과 의무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음.
- 이는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평상시 총당금 적립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라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42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 월 16일

발 의 자 : 김창원 의원(1명)

찬 성 자 : 정진술, 최웅식, 김평남, 정재웅,
박순규, 노승재, 홍성룡, 박기열,
성흠제 의원(9명)

1. 개정이유

시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에 민간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20.4.7.)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리주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추가(안 제2조제6호다목).
- 성능개선 총당금의 적립 주체를 현행 시장에서 민간을 포함하는 관리주체로 확대하고, 공공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성능개선 총당금의 적립의무를 별도 명시함(안 제18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성능개선충당금 적립”을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은”을 “관리주체는”으로, ““서울특별시 성능개선충당금”(이하 “성능개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를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시”를 “관리주체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가.·나.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em;"><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p> <p style="padding-left: 2em;">가.·나.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em;">다. 「<u>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u>」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p>
<p>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u>시장</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u>성능개선충당금</u> 적립) ① <u>시장은</u>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성능개선충당금</u>”(이하</p>	<p>제18조(<u>성능개선충당금</u> 적립) ① <u>관리주체는</u> ----- ----- ----- <u>성능개선충당금을</u> 적립할 수 있다. 다만,</p>

“성능개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성능개선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그 밖에 신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
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
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관리주체의 -----
